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
----------	----

제출일자 : 2006. 10. 16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이 2006. 6. 29일자로 공포, 2006. 7. 1일부터 시행되어
- 나. 위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과 관련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별표 1(제증명 등 수수료)의 구분(증명)란중 제3호 및 제6호 수수료 등을 조정

- 납세증명,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통 500원 ⇒ 800원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500원 ⇒ 800원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1호 500원 ⇒ 8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단,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 2006. 8. 24 ~ 9. 13(20일간) ▷ 제출된 의견없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증명 등 수수료)의 【증명】 란중 제3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납세증명	1통	800원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통	800원	
6. 기타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원	
	(2)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1호	800원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4) 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1,000원	(단, 칼라발급 또는 도면청부의 경우에는 1,5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준	요액	구 분	기준	요액
【증명】 1. ~ 2. (생 략)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납세원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3) 징수유예증명 4. ~ 5. (생 략) 6. 기타 제증명 (1) 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신 설>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1. ~ 10. (생 략)			【증명】 1. ~ 2. (현행과 같음) 3. ----- (1) 납세증명 (2) ----- (3) <삭 제> 4. ~ 5. (현행과 같음) 6. -----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1. ~ 10. (현행과 같음)		
	1종	500원		---	800원
	1종	500원		---	800원
	1종	500원			
	1종	1,000원		1필지	800원
	1필지	500원		1호	800원
	1호	500원		1필지	1,000원
					(단,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1종	1,000원